

<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제정이유

서울 전 지역에서 지하 공간 개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. 이에 지하 공간 공사 시
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
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.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000호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
2019년 1월 3일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“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공공주택
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,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
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·군·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(주택재개발사업)을 시행하는
경우 공공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
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로 인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범위를 정함(안 제20조 제5항 신설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001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
2019년 1월 3일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 항제1호의 가목, 사목, 너목,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.

제54조제13항 중 “제5항” 을 “제6항” 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사무명판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,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)

같은 호 사목 중 “(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국 등 지역단위 청사에 한함)” 을 “(동사무소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분국, 보건지소로 한정함)” 으로 하고,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문화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, 전시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)

같은 호 타목 중 “(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)” 을 “(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)” 으로 하며,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공원(어린이공원, 소공원으로 한정하되,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)